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0. 8.

농 립 축 산 식 품 부
[친환경농업과]

1. 제안이유

정부와 지자체가 친환경농어업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026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권한의 위임 규정과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른 권한의 위임 규정 정비(안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7조제6항제3호)

- 1) 농촌진흥청장,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현행과 같이 친환경농어업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교육·지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과 지원으로 함
- 2) 법률에서 신설된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위임하지 않음

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 정비(안 제8조제1항제1호)

- 1)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양수산부와 합의되었음(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위임사항)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법 제13조”를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제19조제1항”을 “법 제1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3호 중 “법 제13조”를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생 략)	제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 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농업, 축산업, 농산물 및 축산물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 ----- ----- -----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3. <u>법 제13조</u> 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교육·지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과 지원	3. <u>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u> ---- ----- ----- -----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수산업, 수산물 및 그 가공품(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⑤ ----- ----- ----- ----- ----- ----- -----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3. <u>제19조제1항</u> 에 따른 유기식	3. <u>법 제19조제1항</u> -----

품등에 대한 인증

4. ~ 39. (생략)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수산업 및 수산물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2. (생략)

3. 법 제13조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교육·지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과 지원

⑦ (생략)

제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제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

4. ~ 39. (현행과 같음)

⑥ -----

-----.

1. 2. (현행과 같음)

3.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u>법 제13조제2항</u>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무 2. (생략) ② (생략)	----- -----. 1. <u>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u>-----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